



# 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」 고시 개정 알림

「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」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-92호)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\* 동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-행정규칙 검색, 우리부 홈페이지-국민소통-법령정보-훈령·예규·고시에서 검색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 전문 1부. 끝.

##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소속기관(농을), 산하기관(농병), 중앙행정기관(19부), 중앙행정기관(19청), 중앙행정기관(4처), 중앙행정기관(7위원회), 17개 시도, 한국시습협회장, 한국오리협회, 한국육계협회, 대한양계협회, 대한한돈협회, 전국한우협회, 축산기업중앙회, 친환경축산협회, 한국낙농육우협회, 한국종축개량협회, 한국도종닭협회, 한국흑염소협회, 농협경제지주

주무관 **황정은** 사무관 **김동우** 구제역방역과 전결 2023. 12. 12.  
장 **김정주**

협조자

시행 구제역방역과-9210 (2023. 12. 12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544 팩스번호 044-868-0469 / [hje0111@korea.kr](mailto:hje0111@korea.kr) / 대한민국 공개